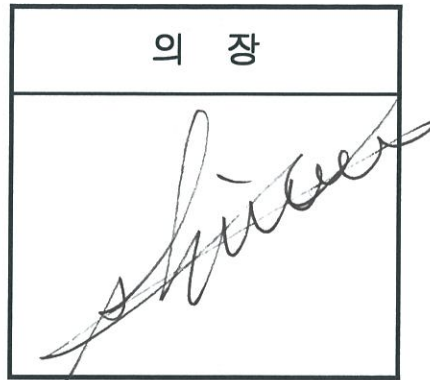


서울을 바라봅니다  
시민을 생각합니다

## 의원발의의안철회



2020. 2.

서울특별시의회  
(의사담당관)

No. 44



# 의원발의 의안철회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(의안·동의의 철회)에 따라 의원발의 의안의 철회요구가 있어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코자 함.

## 철회의안 개요

- 의 안 명 :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의안번호 : 491번
- 발의의원 : 전석기, 박기재 의원(찬성의원 20명)
- 회부일자 : 2019. 3. 29
- 소관 상임위원회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철회요구일자 : 2020. 1. 30.

철회사유 :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변경

## 철회절차

-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그 청구만으로 철회가능

## 향후계획

- 철회사실을 철회 요구의원(전석기, 박기재 의원)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통보

붙 임 : 1. 철회요청 공문 1부.

2.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2020.02.04  
의상